

민법일반 3

실효의 원칙

- -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소유권은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소유권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

소멸시효의 정의

-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의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분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의 원칙이 필요한가?

-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그 권리행사에 대하여 '실효의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실효의 원칙의 필요성

- 1. 현행민법의 시효기간은 너무 장기임 2. 형성권 항변권과 같이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2.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이 요구되는 분야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와 그 징계해임처분의 무효 사유 및 징계해임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예를 들면,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고 오랫동안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든지 해고된 후 곧 다른 직장을 얻어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럽게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것임을 알고서도 2년 4개월 남짓한 동안이나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으로 면직된 때로부터 1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새삼스럽게 그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 (출처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사원확인】 [공1992.3.15.(916),882])

- 이러한 실효의 원칙은 소유권이나 친권과 같은 배타적 항구적 권리에 관하여 그 권리의 본질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예는 없음

- *** (94다12234) 乙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즉각 해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乙에 대하여 위 잔존채무의 이행을 계속 최고하여 왔으며, 乙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1년 4개월 가량이나 경과한 후 비로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 甲이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위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을은 위 해제권은 더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乙이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후 甲이 새삼스럽게 위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와서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223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1.(983),84])